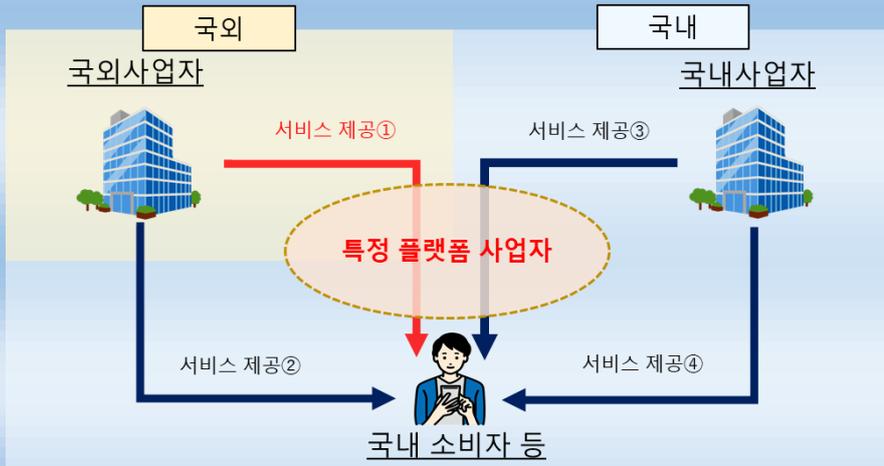


제도 개요

사업자가 일본 국내의 소비자 등을 위해 실시하는 앱 배포 등의 전기통신 이용서비스의 제공^{※1}(사업자용 전기통신 이용서비스의 제공^{※2}를 제외합니다. 이하, '소비자를 위한 전기통신 이용서비스의 제공'이라고 합니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인지 국외사업자^{※3}인지에 관계없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신고·납세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비세법 등의 일부 개정에 의해 2025년 4월 1일 이후에 **국외사업자가 디지털 플랫폼^{※4}를 통해 실시하는 소비자용 전기통신 이용서비스의 제공**과 동시에 **특정 플랫폼사업자^{※5}를 통해 해당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수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특정 플랫폼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납세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 ※1 전기통신 이용서비스의 제공이란 앱 배포 외에 전자책·음악 배포 등 전기통신회선(인터넷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제공을 말합니다.
- ※2 사업자용 전기통신 이용서비스의 제공이란 국외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이용서비스 중, 서비스의 성질 또는 해당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되는 거래 조건 등으로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 통상 사업자에 한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 ※3 국외사업자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 ※4 디지털 플랫폼이란 예를 들어 앱스토어나 온라인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5 특정 플랫폼 사업자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국세청 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개정 전후의 소비자용 전기통신 이용서비스 제공에 관한 신고 납세 의무자>

	서비스 제공①	서비스 제공②	서비스 제공③	서비스 제공④
개정전	국외사업자	국외사업자	국내사업자	국내사업자
개정후	특정 플랫폼 사업자	국외사업자	국내사업자	국내사업자

- 플랫폼 과세 대상은 **국외사업자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실시하는 소비자용 전기통신 이용서비스의 제공**이며, 또한, **특정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그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수수하는 것이므로, 다음의 경우는 플랫폼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국내사업자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용 전기통신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디지털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용 전기통신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실시하는 소비자용 전기통신 이용서비스의 제공으로, 특정 플랫폼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해당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수수하고 있는 경우
- **플랫폼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소비자용 전기통신 이용서비스의** 제공은 지금까지와 같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신고·납세를 수행하게 됩니다.
- **사업자용 전기통신 이용서비스의 제공**은 지금까지와 같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업자가** 신고·납세를 수행하게 됩니다(리버스 차지 방식).

1 플랫폼 과세 대상 여부 확인

- ◆ 플랫폼 과세의 대상은,
 - ✓ 국외사업자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실시하는 소비자용 전기통신 이용서비스의 제공이며,
 - ✓ 또한, '특정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그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수수하는 것입니다.
- ◆ "특정 플랫폼 사업자"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국세청 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국세청 장관이 특정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

※ 2025년 4월 1일부터 플랫폼 과세 대상이 되는 특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정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특정 플랫폼 사업자에 관한 사항

- ①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디지털 플랫폼 명칭**
- ②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성명·명칭**
- ③ 특정 플랫폼 사업자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 ◆ 또한, 국세청 장관의 지정을 받은 **특정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플랫폼 과세 대상이 되는 소비자용 전기통신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해서는 플랫폼 과세 대상이** 되는 취지 **및 플랫폼 과세 대상이 되는 연월일**(특정 플랫폼 사업자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의 통지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 플랫폼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

- ◆ 국외사업자가 실시하는 소비자용 전기통신 이용서비스의 제공이 플랫폼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소비자용 전기통신 이용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는 특정 플랫폼 사업자가 신고·납세를 하게 되므로, 국외사업자에 있어 소비세의 신고·납세는 불필요합니다.
또한, 플랫폼 과세 대상이 되는 소비자용 전기통신 이용서비스의 제공 외에 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세의 신고·납세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 플랫폼 과세 대상이 되는 소비자용 전기통신 이용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는 특정 플랫폼 사업자가 실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국외사업자가 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인보이스 발행 사업자)라고 해도 플랫폼 과세 대상이 되는 소비자용 전기통신 이용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 해당 국외사업자는 적격 청구서(인보이스)의 교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플랫폼 사업자

1 신고 의무

- ◆ 플랫폼 사업자는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서 제출기한※ 까지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신고서**(이하 '지정신고서'라고 합니다.)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 장관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요건》

플랫폼 사업자의 그 과세기간에 있어서, 그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국외사업자가 일본 국내용으로 실시하는 소비자용 전기통신 이용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되는 대가의 금액 중, 해당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서 수수하는 것의 합계액이 **50 억엔을 넘는다**

※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는 신고의무가 있다고 한 경우의 제출기한(법인이면 그 사업연도의 말일의 다음날부터, 원칙, 2 개월 이내)이 됩니다.

2 국세청 장관에 의한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공표

- ◆ 국세청 장관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지정신고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특정 플랫폼 사업자로서 지정합니다(지정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라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특정 플랫폼 사업자로서 지정합니다).

해당 지정은 지정신고서의 제출기한(그 제출기한까지 지정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는 지정통지를 발행한 날)으로부터 6 개월을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첫날에 지정 효력이 발생합니다(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플랫폼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제도 개시 시의 신고 및 지정에 대해서(경과조치)】

2024년 4월 1일을 포함한 과세기간(해당 과세기간이 2024년 8월 1일 이후에 종료되는 과세기간인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이하 '시행시 판정기간'이라고 합니다.)에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4년 9월 30일까지** 지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장관은 시행 시 판정기간과 관련된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고 **2025년 4월 1일에 그 지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 국세청 장관은 특정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특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함과 동시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특정 플랫폼 사업자에 관한 사항

- ①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디지털 플랫폼 명칭**
- ②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성명·명칭**
- ③ 특정 플랫폼 사업자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3 특정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

- ◆ 국세청 장관으로부터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 통지를 받았을 경우, 플랫폼 과세 대상이 되는 소비자용 전기통신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해서 플랫폼 과세 대상이 되는 취지 및 플랫폼 과세 대상이 되는 연월일**(특정 플랫폼 사업자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 플랫폼 과세 대상이 되는 소비자용 전기통신 이용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는 **특정 플랫폼 사업자가 신고·납세**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그 확정신고서에는 플랫폼 과세 대상이 되는 소비자용 전기통신 이용서비스 제공의 대가의 합계액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 ◆ 특정 플랫폼 사업자가 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인보이스 발행 사업자)인 경우, 플랫폼 과세 대상이 되는 소비자용 전기통신 서비스제공에 대해서, **적격 청구서(인보이스)의 교부 의무가 생깁니다.**